

---

1998年度行政事務監査 文教保社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保健福祉局

---

日時 1998年11月30日(月) 午前11時

場所 文教保社委員會會議室

---

(11時 01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李東秦;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그리고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1998년도 서울市 保健福祉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6일에 이어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委員 여러분이 보여준 의욕적인 감사활동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委員會 통합 이후 방대한 소관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움과 새벽 3시까지 서울市 教育행정 의 정립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수고로움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6일에 이어 保健福祉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保健福祉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奎 委員; 우리 保健福祉局長님, 연 이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나와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째 되는 우리 保健福祉局 감사에서 本委員은 지난번 1차 감사 때 미처 확인을 못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추가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립은평병원 신축공사건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공사가 상당기간, 최초의 운영계획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해 버렸다는 이런 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 행정착오 내지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1997년 12월 30일에 총 공사금액 226억 7,800만원에 경향건설하고 영동건설이 공동 수주회사가 되어서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계약자인 경향건설이 부도가 나는 관계로 공사를 6개월 15일간 하지 못하고 지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8년 6월 15일에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계약자인 영동건설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4억 9,986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원계약 때는 없었던 수도공사나 가스공사 비용, 시설분담금이 2,310여 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경향건설이 포기각서를 98년 7월 14일에 썼고, 또한 영동건설하고 調達廳하고의 합의서가 98년 7

월 15일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가 없어요, 원계약서만 있고. 공사비가 추가 계상돼서 작성된 재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서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계약 특약조건 제25조 지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계약자인 경향건설의 부도가 고의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간에 부도로 인해서 6개월 15일간 공사가 지체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은 분명히 받아내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2항에 보면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5조제5항은 "계약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해서 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건설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시설비가 4억 9,986만 5,000원이 추가편성 계상되었고, 물론 거기에는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유야 어떻든 간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議會에 설명이라든지, 또한 의결받을 사항

이 있으면 먼저 議會에 의결이라든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률도 당초에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초과 계상됐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최초에 경향건설하고 영동건설이 계약할 당시에 계약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22억 6,780만원인데 이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에 귀속을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공동 계약자인 영동건설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부분은 이것 또한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保健福祉局長님한테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 제가 요구한 자료, 재계약서하고, 지체상금률하고, 시설분담금하고, 초과공사비 추가 계상된 그 부분, 가건물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부분하고, 공사 계약보증금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부분 이것을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의뢰를 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東秦;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들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답변은 뭐 할 것 없나요?

○委員長代理 李東秦; 답변이 필요하신 건 아니지요?

○金成奎 委員;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東秦;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1998년도 서울特別市議會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및 수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6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없도록 소관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이지만 국가, 사회, 가정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保健福祉局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를 챙겨서 시민복지서비스 제공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시 保健福祉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文化觀光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保健福祉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12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委員

洪承采 李東秦 張鎭國

金成奎 金星煥 羅鍾文

徐興善 劉俊相 李康珍

李英順 李禮子 林浩植

崔明玉 許光泰 吉基演

李海植

○專門委員

尹炳國

○被監查機關參席者

保健福祉局

局長 金在宗

社會福祉課長 金炅圭

老人福祉課長 李正寬

障礙人福祉課長 林忠南

青少年課長 文洪善

保健衛生課長 金永滢

醫藥課長 趙成億

東部病院長 申璣峻